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4

발의연월일: 2020. 6. 17.

발 의 자:김승수·서정숙·윤재옥

조명희 • 이종배 • 정진석

김용판 · 구자근 · 김희국

유상범 · 권명호 · 추경호

이주환 · 강대식 · 전주혜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년,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,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%에 이르고 있음.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, 노인 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.

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중장년의 골목상권 창업은 적절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창업자의 요청 시 동법제9조에 명시된 실태조사에 따라 매출현황,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

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상권의 과도한 경쟁 방지를 통한 건강한 골목 상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또한 이 경우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신규 창업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함(안 제7조제3항제5호 및 안 제28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소상공인 창업교육과 초기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
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
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창업자의 요청 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, 창업희망 지역내 유사 업종 및 업 태의 공급이 과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규 창업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(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제7조(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·시행) 수립·시행) ①·② (생 략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5. 소상공인 창업교육과 초기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. (생략)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제28조(사업 영역의 보호) 정부와 제28조(사업 영역의 보호) ① (종 전의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 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·장소· 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 설>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창업 자의 요청 시 제9조에 따른 실 태조사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

여야 하고, 창업희망 지역내 유

사 업종 및 업태의 공급이 과 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신규 창업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 한다.